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선택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039호
- 나. 제 안 자 : 신선택의원외 18명
- 다. 제안일자 : 2016년 2월 23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2월 24일

2. 제안이유

-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완화해 시정 기여도가 인정되는 다양한 인사에 대한 명예시민 위촉을 활성화하고, 일반시민 추천 조건 강화로 후보자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등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거주요건을 완화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확대함(안 제2조).
- 나. 일반 시민 추천 조건을 강화해 명예시민의 공신력을 강화함(안 제3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거주요건을 완화해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한 명예시민 위촉을 활성화하는 등 명예시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명예시민증 수여제도 운영 현황

- 서울시(이하 “시”)는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외국인이나 방문 외빈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선정은 후보자 추천공고와 추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의회의 동의 과정을 통해 엄격히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막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음.
- 시는 1958년 관련 제도¹⁾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92개국 740명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최근에는 2014년 21명, 2015년 25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음(참고자료 1).

1) 1958년 공로시민증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1972년 근거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와 같은 명예시민증 제도로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시는 특히, 여러 차례 제기된 명예시민 사후관리와 관련해 시 주요시설(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공원, 시립미술관 등) 무료입장 혜택 외에 명예시민의 날(10.28)초청, e-뉴스레터 발송을 통한 홍보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정 연계강화를 위해 연락이 닿는 232명의 명예시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락과 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시는 외국인 방문이 높은 일부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할인 혹은 무료입장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다. 명예시민 거주 요건의 완화(안 제2조)

- 현재 시는 3년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가운데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음.
- 안 제2조제2항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거주요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해 일반적인 거주요건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완화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실제 현재 시의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의 거주요건 기준은 「국

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귀화요건²⁾과 유사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객관적으로 시정 기여도가 인정되는 다수의 경우에 명예시민증 수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명예시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혜택의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와 같은 질적인 개선외에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선정해 명예시민의 수를 늘려가는 양적확대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거주요건 완화의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명예시민증의 권위나 희소성에도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선정심사위원회를 비롯한 선정 절차를 통해서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것임.

라. 일반 시민 추천 조건의 강화(안 제3조)

- 안 제3조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후보자 추천 조건 가운데 일반 시민의 추천요건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함.
- 이는 일반 시민 추천의 조건을 강화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2) 「국적법」 제5조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계속하여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무분별한 대상자 추천 가능성을 사전에 제한해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과 선정과정의 공신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로 추천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일반시민에 의한 추천보다는 공공단체 혹은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 일반 시민 추천 조건의 강화가 명예시민증 자체의 권위나 공신력 회복으로 직접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마. 종합의견

- 시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이를 격려하고 서울 홍보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거주요건의 완화와 일반시민 추천제도의 강화와 같은 조치는 명예시민증 자체의 권위와 선정절차에 대한 공신력을 회복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혜택의 지속적인 확대와 협력·유대강화를 비롯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병행해 명예시민제도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명예시민증 수여현황

□ 연도별

('16. 2월 현재)

구 분	총 계	외국귀빈	시정(국가) 유공	국제대회 참석	기 타	비고
총 계	740	131	439	163	7	
공로시민증(소계) (1958~1969)	136	28	69	34	5	
명예시민증(소계)	604	103	370	129	2	
1973~1980	155	6	19	129	1	
1981~1990	13	5	7	-	1	
1991	6	1	5	-	-	
1994	1	1	-	-	-	
1995	85	-	85	-	-	
1996	4	2	2	-	-	
1997	4	1	3	-	-	
1998	12	-	12	-	-	
1999	16	2	14	-	-	
2000	7	-	7	-	-	
2001	14	3	11	-	-	
2002	11	4	7	-	-	
2003	9	2	7	-	-	
2004	23	11	12	-	-	
2005	38	27	11	-	-	
2006	27	10	17	-	-	
2007	13	2	11	-	-	
2008	16	1	15	-	-	
2009	17	1	16	-	-	
2010	42	2	40	-	-	
2011	17	3	14	-	-	
2012	12	1	11	-	-	
2013	16	0	16	-	-	
2014	21	9	12	-	-	
2015	25	9	16	-	-	

□ 국적별 : 92개국 740명

대륙	국 적		계 (단위: 명)	성 별		대륙	국 적		계 (단위: 명)	성 별	
				남	여					남	여
아프리카 (44)	1	가나	2	2	0	유 럽 (214)	10	벨기에	11	6	5
	2	나이지리아	6	6	0		11	벨로루시	1	1	0
	3	남아프리카공화국	5	4	1		12	불가리아	1	1	0
	4	레소토	1	1	0		13	스웨덴	6	5	1
	5	사우디아라비아	4	4	0		14	스위스	3	2	1
	6	세네갈	2	2	0		15	스코틀랜드	1	0	1
	7	수단	11	11	0		16	스페인	7	4	3
	8	알제리	1	1	0		17	슬로바키아	2	2	0
	9	앙골라	1	1	0		18	아이슬란드	1	0	1
	10	에티오피아	4	4	0		19	아일랜드	4	3	1
	11	이집트	1	1	0		20	영국	28	19	9
	12	콩고민주공화국	3	3	0		21	오스트리아	5	4	1
	13	차드	1	1	0		22	우크라이나	2	2	0
	14	코트디부와르	2	2	0		23	이탈리아	14	10	4
아시아 (177)	1	네팔	4	3	1		24	체코	3	3	0
	2	대만	6	6	0		25	터키	14	13	1
	3	말레이시아	4	3	1		26	폴란드	4	4	0
	4	몽골	4	3	1		27	프랑스	18	13	5
	5	베트남	7	7	0		28	핀란드	3	2	1
	6	스리랑카	1	0	1		29	헝가리	5	5	0
	7	싱가포르	7	6	1		1	과테말라	2	1	1
	8	인도	3	2	1	2	도미니카	2	1	1	
	9	인도네시아	5	4	1	3	멕시코	13	10	3	
	10	일본	45	36	9	4	바하마	1	0	1	
	11	중국	39	36	3	5	베네수엘라	2	0	2	
	12	캄보디아	1	1	0	6	벨리즈	1	0	1	
	13	타이티	1	0	1	7	볼리비아	1	0	1	
	14	태국	17	14	3	8	브라질	5	4	1	
	15	파키스탄	1	1	0	9	아르헨티나	4	2	2	
	16	필리핀	13	10	3	10	에쿠아도르	1	0	1	
	17	우즈베키스탄	6	3	3	11	엘살바도르	1	1	0	
	18	카자흐스탄	10	9	1	12	온두라스	2	1	1	
	19	키르기스스탄	3	2	1	13	우루과이	1	0	1	
중 동 (8)	1	이스라엘	2	1	1	14	칠레	6	5	1	
	2	요르단	1	1	0	15	코스타리카	4	2	2	
	3	이라크	3	3	0	16	콜롬비아	4	3	1	
	4	이란	2	2	0	17	트리니다드토바고	1	0	1	
유 럽 (214)	1	아제르바이잔	1	1	0	18	파나마	1	0	1	
	2	그리스	8	6	2	19	파라과이	1	0	1	
	3	네덜란드	10	6	4	20	페루	11	9	2	
	4	노르웨이	5	3	2	21	푸에르토리코	1	0	1	
	5	덴마크	5	4	1	북 미 (211)	1	미국	192	148	44
	6	독일	37	33	4	2	캐나다	19	14	5	
	7	러시아	12	11	1	오세아니아 (21)	1	호주	11	7	4
	8	루마니아	2	2	0	2	뉴질랜드	9	8	1	
	9	몰타	1	0	1	3	피푸아뉴기니	1	0	1	

〈참고자료 2〉

1.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